

2026년 제3회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직원 채용 공고문(재공고 포함)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근무할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I 채용예정 분야

(※ 모집분야에 대한 중복응시 불가)

□ 채용(예정)인원: 총 7명

채용분야	직급(직위)	선발예정인원	직무내용	비고
지도직	임기 4급 (관장)	1명	• 청소년수련관 운영 총괄 ※ 기타 행정 및 제반 업무 등	
상담직	일반 7급 (대리)	2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행정 • 청소년안전망(CYS-Net) 사업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 학교밖지원팀 사업 운영 및 관련 행정 업무 ※ 통합채용 후 팀 및 업무 배정	
시설직	일반 7급 (대리)	1명	• 시설(수영장 포함)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 관련 행정업무 및 기타 제반 업무 등	
지도직	육아휴직대체 기간제(사원)	1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 기타 행정 및 제반 업무 등	재공고
미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2명 (남 1명, 성별무관 1명)	• 청소년수련관 내·외부 환경정비 및 정돈 • 남·녀 탈의실 정비 등	

※ 주요 업무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직무라도 채용 후 인사발령 및 업무 분장에 따라 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

II 채용자격 기준

□ 응시자격

공통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미화는 자격기준에서 성별 확인) ※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인사규정에 따름) ※ 임기제, 기간제근로자는 정년을 적용받지 않음
결격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합격자에 한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결격사유 확인 실시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의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
 - 4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구 분	직급(직위)	자격기준
지도직	입기 4급 (관장)	<p>※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p>※ 비 고</p> <p>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상담직	일반 7급 (대리)	<p>※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p>※ 비 고</p> <p>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시 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구분	직급(직위)	자격기준
시설직	일반 7급 (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시설관리 실무경력(상근) 1년 이상인 자 <p>※ 비고 기계 등 관련 분야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p>
지도직 (방과후 아카데미 담임)	육아휴직 대체기간제 (사원)	<p>※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4.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5. 청소년육성 업무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p>※ 비고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분야는 성평등가족부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인력관리 참고(별표 2)</p>
미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무관, 출·퇴근 가능한 자 ※ 남성 1명(남자 탈의실 정비를 위해 업무 특성상 1명은 남성대상 채용) ※ 성별무관 1명

□ 가점사항 (※ 단, 대상자 중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적용)

구분	가 점	세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 보존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div> <p>※ 중복 해당 시 1개만 적용</p>
가산점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총점(25점)을 기준으로 각 전형별 과락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가점 적용 ※ 적용 시에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에 한함 ※ 가산점 적용기준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부여함 2. <u>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해당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u>

III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주 40시간, 일 8시간,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

채용분야	직급(직위)	근무시간	근무기간	근무지
지도직	임기 4급 (관장)	월~금 09:00~18:00	채용일부터 2년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소속시설
상담직	일반 7급 (대리)	월~금 09:00~18:00	채용일부터 정년까지	
시설직	일반 7급 (대리)	월~금 06:00~20:00 (2교대 근무)		
지도직	육아휴직대체 기간제(사원)	월~금 10:30~19:30	채용일부터 2026. 8. 2.까지	
미 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2교대)월~금 06:00~20:00 토 09:00~12:00	채용일부터 2027. 12. 31.까지	

※ 인사발령 사항에 따라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재단 시설: 미래전략실, 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 근무시간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육아휴직대체 기간제: 휴직대상자의 휴직기간(연장·조기복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 「재단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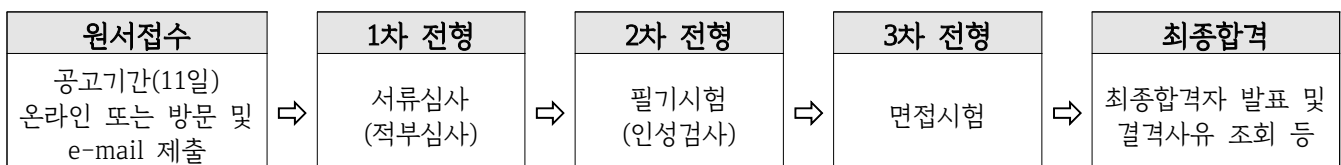
직급(직위)	보 수	비 고
임기 4급 (관장)	연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임호봉 공무원 6급에 준함(상한액 공무원 6급 26호봉) - 상한액은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를 포함 경력에 따라 호봉심의위원회에서 보수수준 결정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 지급
일반 7급 (대리)	호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임호봉 공무원 9급에 준함 경력에 따라 호봉심의위원회에서 보수수준 결정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 지급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있음(수습기간 동안 임금 차이 없음)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육아휴직대체)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급 11,300원(2026년 연천군 생활임금 기준) 주휴수당 등

※ 육아휴직대체 기간제: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지급(채용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다름)

IV 채용전형

□ 채용방식: 블라인드 채용

□ 전형단계 ※ 각 전형별 불참자 또는 응시 거부자는 불합격 처리됨



※ 기간제근로자(단시간, 육아휴직대체)는 2차 전형(필기시험) 미 실시

□ 채용방법

구분	주요내용	
공고기간	○ 초일 불산입, 공휴일 포함 10일 이상(채용공고 별첨)	
접수기간	○ 토, 일등의 공휴일 제외 5일 이상	
1차 서류심사	심사기준	○ 자격기준에 대한 적격·부적격 심사
	심사방법	○ 서면심사(채용분야 응시 자격요건 적격 여부 확인)
	합격자결정	○ 합격배수: 적격자 전원
2차 필기심사	심사기준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통한 적격·부적격 심사
	심사방법	○ 현장 진행 온라인 필기 심사(인성검사)
	합격자결정	○ 합격배수: 적격자 전원
3차 면접심사	심사기준	○ 2차 필기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문답식 면접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심사방법	○ 평가방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한 문답식 종합평가 ○ 평가배점: 총점 25점(만점) + 가점(해당 시) ○ 평가항목: 재단 직원채용 면접시험 채점표(붙임 2)
	합격자결정	○ 합격배수: 채용인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평균점수가 15점 이하거나 평정 최하(1점)가 있을 시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면접시험 점수 최고·저점 합산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 발표	방 법	○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함)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예비 합격자 제도	기 준	○ 최종 합격자(임용예정자)가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순위(차순위자)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기 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공고	기 준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기 간	○ 공고 및 접수기간 단축(공휴일 제외 5일)

V 채용일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공고기간	○ 2026. 4. 24.(금) ~ 5. 4.(월)	11일간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4. 24.(금) ~ 5. 4.(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인정 - 온라인접수: 2026. 4. 24.(금) ~ 5. 4.(월) 18:00까지 ※ 재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가능 - 방문접수: 2026. 4. 24.(금) ~ 5. 4.(월) 09:00 ~ 18:00(대리접수 가능) (접수처: 연천읍 문화로140 연천군청소년수련관 2층 미래전략실) ※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e-mail접수: 2026. 4. 24.(금) ~ 5. 4.(월) 18:00까지 도착분 (접수: yyf01@ycyc.or.kr) ※ 메일접수 시 유선 접수 확인 必 ○ 제출서류(첨부 서식 참고)	11일간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차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 일 시: 2026. 5. 6.(수) 예정 ○ 심사내용: 자격기준 적·부 심사	
2차 필기심사 및 결과발표	○ 일 시: 2026. 5. 11.(월) ~ 5. 12.(화) 예정 ○ 방 법: 재단 홈페이지 게재	
3차 면접심사	○ 대 상: 2차 필기심사 합격자 전원 ○ 일 시: 2026. 5. 18.(월) 예정 ○ 장소 및 시간: 필기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 발 표 일: 2026. 5. 19.(화) 예정 ○ 방 법: 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함)	
임용후보자 등록	○ 등 록 일: 2026. 5. 20.(수) ~ 5. 26.(화) 18:00까지	방문등록
임용예정일	○ 2026. 6. 1.(월) 예정	개별통지

VI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응시원서	1. 서류전형 자격기준 본인 확인서(붙임 1서식) 1부 *미화 제외 2. 입사지원서(붙임2 서식) 1부 3.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및 직무수행 계획서(붙임 4 서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5 서식) 1부 ※ 취업지원 대상자는 가점 적용(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및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해당하오니 입사지원서에 기재 必	접수기간
면접전형	1. 공통사항: 신분증(본인 확인용) 2. 해 당 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 자격기준 부합여부 확인)	면접당일
최종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VII 기타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써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가족관계,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 증빙서류에 기재된 성별, 출신지 등은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 발생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응시원서의 작성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시자격이 미충족 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 및 합격 부적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부정합격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임용 이전 수령 예정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자격 미달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서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 관련 자격증 및 경력사항은 접수기간 내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는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후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
 - 청구양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청구방법: 우편(접수처) 또는 팩스(031-834-8778), e-mail(yyf01@ycyc.or.kr)
 - 반환방법: 직접 방문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구인자 비용부담의 등기우편(특별취급우편물제외)
- 비위 채용자의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단, 기간제(육아휴직, 단시간)의 경우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용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단 제규정을 준용합니다.
- 채용전형이나 최종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미래 전략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70-8852-0411)

별표 1 시설직 관련분야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 기준표

구 분	기 준	비 고
기계 등 관련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관리기능장 ○ 에너지관리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별표 2 성평등가족부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 -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분야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분야〉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평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9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내일이룸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 「아동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2의1.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2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킴,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4. 「경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